

[별지 1]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)</p> <p>① 「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, 시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.(2019.1.30.)</p> <p>1.~7. 생략</p> <p>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최고근로인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, 시상인원은 연 2명 이하로 한다.(2019.1.30.)</p> <p>1. ~ 2. 생략</p> <p>③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최고경영인상 신청(추천)서 1부(별지 제1호서식)</p> <p>2. 최고근로인상 추천서 1부(별지 제2호서식)</p> <p>3. 공적조서 1부(별지 제3호서식)</p> <p>4. 회사소개서 1부(별지 제4호서식)</p> <p>5. 공적 증거자료(현물, 사진,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)</p> <p>④ 관내 각급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·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, 추천 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.</p> <p>⑤ 군수는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관내 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)</p> <p>① 「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, 시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.(2019.1.30.)</p> <p>1.~7. 생략</p> <p>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최고근로인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, 시상인원은 연 2명 이하로 한다.(2019.1.30.)</p> <p>1. ~ 2. 생략</p> <p>③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최고경영인상 신청(추천)서 1부(별지 제1호서식)</p> <p>2. 최고근로인상 추천서 1부(별지 제2호서식)</p> <p>3. 공적조서 1부(별지 제3호서식)</p> <p>4. 회사소개서 1부(별지 제4호서식)</p> <p>5. 공적 증거자료(현물, 사진,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)</p> <p>④ 관내 각급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·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, 추천 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</p> <p>⑤ 군수는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관내 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 기준일은 공고일로 한다.</p>